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12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문옥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096,015원 및 그중 23,863,882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24,096,015원 및 그 중 23,863,882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9. 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4,096,015원 및 그 중 23,863,882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9. 9.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18.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신용보증약정’은 위 약정을 가리킨다)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신용보증서’는 이를 가리킨다), 소외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고(다만 아래에서 ‘본인’은 소외회사, ‘신보’는 원고를 가리킨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연 8%이다.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이후 이 사건 대출의 기간연장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도 1년씩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일부 감축된바, 최종적으로 2019. 6. 13. 보증기한은 2020. 6. 12.까지, 보증금액 2,35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2020. 3. 16. 소외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한바, 중소기업은행은 2020. 4.

16.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0. 6. 22.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7. 9.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23,863,882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단51346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바,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20. 6. 2. 합계 218,743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피고들의 이혼, 소외회사의 파산

1) 피고 A은 2018. 8. 23.경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20. 3. 16. 위 아파트를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20. 3. 20.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20. 3. 2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호협79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0. 6. 30. 그 확인을 받았고, 2020. 7. 20.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0. 6.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2010. 12. 25.생)을 두었는데, 위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B로 결정하는 협의를 하였다.

3) 소외회사는 2020. 5. 11. 수원지방법원 2020하합5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20. 6. 4.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8. 9. 28. 채권최고액 4억 1,52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20. 3. 20.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종전의 2018.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 대위변제금(보증채무이행금액) 23,863,882원, (2)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위약금 16,390원[= 보증금액 2,350만 원 ×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 8/1000 × 26일(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7. 8.까지)/365일, 원 이하 버림] (3) 채권보전비용 218,743원, 합계 24,096,015원[= 위 (1) + (2) + (3)]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위 (1)의 23,863,8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인 2020.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은 위 피고가 원고와 소외회사의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6. 16.부터 2019. 6. 13.까지 각 보증기한 연장시마다 소외회사가 원고에 제출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피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은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은 소외회사가 파산절차에서 현금화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감면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체납세금이 아니고, 위 주장을 파산절차에서 소외회사의 재산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A은 보증금액 2,3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금액은 ‘신용보증원금’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원금 외에 위 약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금액과 제2항의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금액은 위 약정에 따른 것인바, 위 약정에 반하는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전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증여 당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다가 그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20. 5. 11. 파산선고를 신청한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0. 7. 9.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채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 A의 채무초과

이 법원의 D, E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D 대출채무 337,324,42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72,02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173,266,000원, F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4,232,000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23,863,000원, 합계 620,705,420원 상당이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은 찾을 수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4억 5,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 사이에 매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도 위 매매가액과 같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그중 가장 고가인 5억 9,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 무렵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재산분할 여부

(1)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은 재산분할이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들의 혼인관계, 협의이혼의 진행경과, 이들이 피고 B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결정하는 협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증거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직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는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2020. 3. 16. 및 2020. 4. 15. 피고 A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의 은행계좌로 각 ‘급여 15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B가 2020. 3. 20. 피고 A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증거 및 협의이혼에 재산은닉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의 거래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 B는 2020. 3. 16. 및 2020. 4. 15. 각 ‘급여 150만 원’은 자신이 혼인기간 중 소외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20년 2월분 및 3월분 급여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2020. 3. 20. 피고 A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 A의 신용카드로 취, 등록세 합계 1,44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아 위 취, 등록세 상당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20. 3. 20. 신용카드로 안산시 상록구의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합계 1,4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제 일자와 내역에 비추어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납부할 취득세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취득세 상당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편 2020. 3. 16. 및 2020. 4. 15.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그 금액과 입금일에 비추어 위 돈이 정기적인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급여로 표시된 점, 그 무렵 피고 A이 소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2020. 4. 15. 이후로는 급여로 표시된 돈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돈이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증여나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모 H이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일주일 전인 2018. 8. 16. G조합에서 H 소유의 제주시 I 소재 대지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비추어 위 돈의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돈의 송금경위에 관하여도 여러 가능성을 주장하나 그 중 입증된 것은 없다), 위 돈의 상당 부분이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8. 8. 23.경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 4억 6,5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증여 무렵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37,324,420원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H이 송금한 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상회한다. H이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B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 B가 재산분할로 양도받은 재산액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와 증여 당시의 시세차익 상당액 정도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격에 비추어 위 시세차익은 적게는 없거나 많게는 1억 3,000만 원 남짓이다. 피고들의 혼인기간이 약 10년이고, 피고 B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들의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3층 호 130.811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49651㎡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9651분의 81.2231

- 이 상 -

